국제우편물류센터 공고 제2022-06호

2022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 채용 공고
- 항공경비 분야 -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무직 근로자(우정실무원)를 신규 채용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1월 28일

국제우편물류센터장

1. 모집인원

가. 채용분야 : 우정실무원(항공경비)

나. 모집인원 : 1명(여)

2. 채용직종 및 근무지역

직 종	업무내용	근무예정우체국	인원
우정실무원 (**항공경비**)	보호구역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 방지 등	국제우편물류센터 지원과	1명(여)

3. 근로조건

가. 신분 및 근로계약 : 비공무원 신분의 공무직 근로자

※ 최초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기간중 업무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습기간 만료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나. 보수, 근무시간, 휴가 등의 근무조건은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0 근무형태- **일근(주5일)**

4.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최종(면접)시험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나. 국적 : 대한민국

다. 신원조사(범죄경력 포함)에 이상이 없는 자(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신원조사 실시 후, 채용 여부 결정)

라. 인가증(항공경비인증서(직무교육이수증))* 소지자

-공고일 현재 자격이 유효한 자

* 발행기관: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항공보안법 제28조)

마.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바. 합격후 즉시 채용이 가능한 자

사. 우정사업조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최종시험일 현재 우편관계 법령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 불가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경비업법 제10조(항공경비 및 보안검색 결격사유)

-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114조의 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위 각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

5. 우대 요건 (서류전형에 한함)

가. 정보화 관련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ㅇ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술자격(ITQ),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인터넷정보관리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발행 한) 중 1개 이상 소지자

나.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6개월 이상 관련 직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5조 준용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6. 시험 방법

시험단계 / 채용분야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우정실무원	서류전형	면접시험 (지원자 면담 포함)

가. 제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요건,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 적격, 부적격 여부를 판단
- 다만,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동점자 발생시 모두 합격)

나. 2차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이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기준 : 공무수행 정신자세, 전문지식, 의사표현력, 성실성, 발전가능성 등

ㅇ 면접시험시 **지원자 면담*** 실시

* 지원자 면담 평가 요소 : 지원자 성격, 경력 확인, 기타 필요사항 등

7. 응시 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서식 등은 국제우편물류센터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se/ipo),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 채용안내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22. 01. 28.(금) ~ 02. 07.(월), 접수시간 : 09:00~18:00

※ 단, 점심시간(12:00~13:00), 토·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방문접수 불가함

다. 접수장소 : 국제우편물류센터 지원과 (☎ 032-745-9861)

※ (우) 22381 인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 국제우편물류센터 지원과

라. 접수방법 : 등기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모든 접수분은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우정실무원 응시원서 재중』 표시

※ 등기우편으로 접수된 응시표는 면접시험 대상자에 한하여 시험당일 배부

※ 단,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며, 등기우편접수 응시자는 반드시 접수 유무를 확인

※ 코로나19 전파·감염예방을 위해 가급적 우편접수하시기 바라며 우편 접수시 배송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도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마. 응시제출서류

o 응시원서 1부 【붙임 서식 사용】

o 이력서 1부 【붙임 서식 사용】

o 자기소개서 1부 【붙임 서식 사용】

o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및 활용동의서 각 1부【붙임 서식 사용】

o 주민등록초본 1부

- 주소변동 이력 표시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하여 표시
-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에 한함

o 인가증 * 사본 각 1부(항공경비인증서 및 직무교육 이수증명서 등)

* 발행기관: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항공보안법 제28조)

- 자격 유효 여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여야 함

o 국가항공보안계획에 지정된 서약서 1부 【붙임 서식 사용】

o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서 1부【붙임 서식 사용】

o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포함

※ 단, 최근 5년 이내의 직무와 관련된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제출

o 정보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o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우대요건 증빙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각 구비서류는 권한있는 기관의 발행 및 유효기간의 여부 등에 따라 확인되며 누락이 있는 경우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이나 자격 등은 인정되지 않음
(경력사항 기재시 직위(급),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

※ 모든 제출자료는 견출지, 스테플러 등을 사용치 마시고 집게 등을 이용하여 편철하여 주시기 바람.

o 신원진술서(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포함) 1부
-(면접시험 합격자에 해당) 【붙임 서식 사용】

o 기본증명서(상세) 1부(면접시험 합격자에 해당)

o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면접시험 합격자에 해당) 【붙임 서식 사용】

8. 시 험 일 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02. 10(목) 국제우편물류센터 홈페이지 게시

나. 면접시험 : 2022. 02. 14.(월)

※ 우편접수된 응시표는 면접시험 대상자에 한하여 당일 배부

※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시작 20분전까지 지정한 장소에 입실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불합격 처리됨

다.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22. 02. 15.(화) 국제우편물류센터 홈페이지 게시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02. 28.(금) 국제우편물류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유선 또는 SMS)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면접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마. 채용일(예정) : 2022. 03. 02.(수)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9. 유 의 사 항

가. 응시원서는 1회에 한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희망자는 채용자격 요건에 맞는지를 잘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

기 바라며, 접수된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따른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기제출한 채용 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마. 최종합격자는 채용 연기가 불가하므로 학업(재학생) 등으로 채용유예는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후, 채용신체검사 등 채용에 필요한 서류는 2022. 02. 25.(금)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국제우편물류센터 홈페이지에 변경공고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 최종합격자가 근로계약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준용)

차.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면접시험시 시험 보안을 위해 면접시험장에는 휴대폰 반입을 금지합니다.

타. 코로나19 1) 확진자이거나 2) 확진자 또는 밀접접촉자와 접촉을 하였거나 3)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응시자의 경우에는 원서접수 마감일(2.7(월))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제우편물류센터 지원과(☏ 032-745-98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